

보석결정,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선거사범이나 대기업 비리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으로 사범신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고무줄 같은 보석결정과 막말 판사 때문에 또 다시 대법원장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된 전 경찰청장이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급격하고도 중한 발병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할 보석 결정을 사정 변경 없이 전격적으로 한 것은 오랜 재판 끝에 법정 구속이라는 결단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판사 잘못 걸리면 구속, 잘 만나면 석방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자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기각된 보석이 허가결정으로 반복된 사례나 법정 구속된 지 열흘도 안 돼 보석으로 풀어준 경우처럼 일관성을 잃은 보석결정도 문제거니와 병보석이 불허된 대기업 총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경우처럼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석방(有權釋放)이라는 비난을 받을 형평성 없는 보석결정은 더 큰 사법 불신을 불러온다.

보석허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은 인원은 3,768명(2010년), 3,232명(2011년), 2,543명(2012년)으로 점차 줄었다. 보석허가를 받은 인원뿐만 아니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비율도 44.2%(2010년)에서 37.9%(2012년)로 떨어졌다. 법원의 보석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사가 까다로워질수록 그 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전관의 힘이 있는 변호사를 붙이는 것이다. 소송 당사자 개인이 보석허가

하 태 훈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를 내달라고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 10월 광주지법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의 보석허가율은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의 경우 47.6%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은 33.2%에 그쳤다는 것이다. 변호인을 붙이는 경우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보다 보석허가율이 높다고 믿으니 변호사를 찾는 것이고 전관의 힘을 믿고 전관을 선호하는 것이다. 전관변호사와 유착될 수 있는 지역법관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천억 원이 넘는 교비횡령 비리로 구속된 지방 대학교 설립자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보석허가 결정을 한 향판(鄉判)과 담당 향판 출신 변호사의 유착을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인신구속을 최소화하여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제한하고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석방의 기회를 넓혀 방어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석제도 운용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평등, 그것도 절대적 평등을 원한다. 조금만 차이 나도 그 차이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차별로 느낀다. 그렇다고 그 편차를 없애기 위해 보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양형기준제와는 달리 바람직하지 않다. 보석건수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편차가 나는 사건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에 등장하는 몇몇 사례가 사법 불신을 키우기 때문에 사법부가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정변경도 없이 재판부가 바뀌자 보석결정이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사례나 정치인이나 기업총수처럼 보석결정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진관의 변호인을 붙여야 보석이 쉽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장전담판사와 같은 전담판사제도는 아니더라도 재판에 경험이 많은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함으로써 보석결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도주우려나 주거불분명 등을 보석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석이란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입법적 문제가 있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므로 법원이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하다고 일률적으로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보석의 취지를 살려 보증금과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석방해야 한다. 그래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 방어준비는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에게만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 힘 있는 자에게만 '법 앞에 평등'이 아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며칠 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거물 정치인들이 병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가장 재량의 여지가 넓은 보석사유가 병보석이라니 '고무줄 보석'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힘 있는 자의 병이 힘없는 자의 병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위중한 것으로 우대받는 것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